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 01117- 1875		<b>기 안 용 지</b> (전화: 731-6222 )		시 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7.13              김기공           </div>			
시행일자		'87. 6.					
보조기관		부시장 <b>정결</b> 내무국장 인사과장					
기안책임자		최령수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명의		시 장	
제 목		87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계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1987. 7. 1              서울특별시              인사과장계              경일              1987. 7. 10              통계관              발 종 인           </div>			
(제1안)		내부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며,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안) : 별첨					
		나. 공고일 : '87.7.15이전					
		다. 공고기간 : '87.7.16-8.15					
		라. 신청기간 : '87.8.17-8.21(5일간)					
첨 부 :		'87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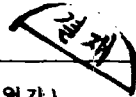
(제2안)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동 건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하반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del>양곡공인</del> 과 같이 시보에 게재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이며,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하여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할수 있도록 조치할것.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자증
(1) 일반명예퇴직
○ 5급이상(정년61세): 27.7.1-31.6.30 출생자
○ 6급이하(정년58세): 30.7.1-34.6.30 출생자
(2) 상병퇴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껍질상태로 되어
○ 5급이상 : 31.7.1-36.6.30 출생자
○ 6급이하 : 34.7.1-39.6.30 출생자
나. 신청기간 : '87.8.17- 8.21 (5일간)
다.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서 작성요령

(1) 근속기간 : 수당지급 신청개시일(87.8.17)기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기재
(2) 정년잔여기간 : 수당지급 신청개시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기간 *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 일반명예퇴직: 15일이상은 1월, 15일미만은 계산치않음 - 상병퇴직 : 6월이상은 1년, 6월미만은 계산치 않음
(3) 수당지급대상기간 : '87.9.30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퇴직일 까지의 기간
(4)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 일반명예퇴직: 퇴직월(87년9월)봉급액 x $\frac{1}{2}$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 봉급액 x $\frac{1}{2}$ x 지급규정백수
2. 소방직공무원은 본 계획에 의거 소방본부 자체에서 별도로 신청접수 심사, 특별승진, 명예퇴직 결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그결과를 '87.9.15까지 인사과장 참조 보고할것.
첨 부 : 공고안 1부. 끝.
수신처 : 서과, 서사, 서구.
(제3안)
수 신 : 공보관 발신 : 인사과장

제 목 : 시보저재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87년도 하반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87.7.15이전



나. 공고기간 : '87.7.16- 8.15 (1월간)

다. 공고(안): 별 첨

첨 부 : 공고(안) 1부. 끝.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공고심사	1987.7.9	제 203 호
담당자	법제처	방무담장관
30	79	69

1987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 7. .

서울특별시 상

1. 명예퇴직대상자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sup>이상</sup>보다 10년 이내 자진 퇴직하는자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 : '87.8.17 - '87.8.21 (5일간)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의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것.

3. 명예퇴직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명예퇴직대상자의 사직원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sup>자</sup>은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속기관<sup>의</sup>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며 소속장은 참조 예산 담당관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요구하여 지급한다.

6.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시장

- 끝 -